

○ 양 천 구 의 회
○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05. 11.

복지건설위원회

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865호	검토	전문위원 신훈
의안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공기환 의원외 10명	발의일자	2023. 4. 27.
소관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자	2022. 4. 28.

1

제안이유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항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여 공영주차장의 안정적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를 상위 주차장법에 따르도록 변경함(안 제2조)
- 나. 주차요금 부과 행위에 대한 중복 내용 삭제함(안 제3조)
- 다.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유공자 및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범위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혜택을 확대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으로 추가함 또한, 할인에 따른 단수 계산을 합리화하고 회차 감면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7조)
- 라. 입찰자격에 대한 근거규정을 현행화하고 안정된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조정함(안 제8조)

- 마. 부설주차장 하위에 있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가족배려주차장 (종전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 구역 등의 설치기준을 총칙으로 이동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함 (안 제8조2부터 제8조의4)
- 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과 반환근거를 일치시킴 (안 제13조 및 제17조)
- 사. 노외주차장의 기능유지를 위해 부대시설에 제한을 둠(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주차장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6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주차관리과 협의완료.

라. 기타

- 1) 조례안예고 : 2023. 4. 28. ~ 2023. 5. 3.
- 2) 개정안 : 별 첨

4

검토의견

□ 조례 제정 취지 및 배경

-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영주차장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조문별 검토

- 안 제2조는 본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는 것으로 용어의 정의가 자치법규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법제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추후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법령에 맞추어 적용되도록 한 것임 .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p> <p>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p>

<p>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p> <p>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p> <p>4. “여행주차장”이란 여성이 우선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말한다.</p> <p>5. “공유주차구획”이란 노상주차장 내 유휴 주거지 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 구획 제공 신청을 받아 지정한 주차구획을 말한다.</p>	
---	--

○ 안 제3조는 주차요금 부과행위에 2항과 3항이 중복되어 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② (생략)</p> <p>③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제1호를 준용하고,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 안 제7조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유공자 범위확대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감면대상자로 확대함.
 -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하여 기존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도 30%에서 50%로 감면율을 상향토록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급속충전이 50분 이상 소요됨에 따라 충전행위에 따른 감면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확대함.
 - 긴급·공무수행 관용차량 및 행사참석 차량의 감면근거를 신설함.
 - 할인에 따른 단수 계산을 합리화(50원 미만 절사에서 10원 미만 절사)하고 회차 감면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2분미만에서 5분 미만)함.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p> <p>1. <u>다음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용하는 자동차</u>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p> <p>가. (생략)</p> <p>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p>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 -----.</p> <p>1.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u>-----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p>

제6호·제12호·제13호·제15
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
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
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라. (생략)
<신설>

<신설>

<신설>

2. ~ 6. (생략)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 제2에 따른 전통시장의 활성화
를 위하여 전통시장에 인접한 공영주
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
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영
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발행한 주차
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
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해 주어야
한다.

8.·9. (생략)

10.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 따른 -----

다.·라. (현행과 같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증서를 제시한 사람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
자증서를 제시한 사람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사람

2. ~ 6. (현행과 같음)

7. -----
----- 제2조제1호 -----

8.·9. (현행과 같음)

10. 서울특별시 다동이 행복카드 소

<p>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p> <p>11. · 12. (생략)</p> <p>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를 공급할 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간부터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p> <p>14. · 15. (생략) <신설></p> <p>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5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p> <p>③ (생략)</p> <p>④ 주차장에 최초 입차한 시간으로부터 2분 이내에 출차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p>	<p>지자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p> <p>11. · 12. (현행과 같음)</p> <p>13. ----- ----- ----- ----- 경우 1시간 30분의 ----- 3 0분 초과 ----- -----.</p> <p>14. · 15. (현행과 같음)</p> <p>16. 긴급차량, 공무수행 관용차량, 공공행사 참석자가 이용한 차량 등 감면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구청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행사 참석자의 차량은 행사 주관기관에서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 10원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5분 미만의 시간 ----- -----.</p>
--	---

○ 안 제8조는 입찰자격에 대한 근거규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현행화하고 안정된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조정함.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p> <p>3. (생 략)</p> <p>②·③ (생 략)</p> <p>④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계속하여 주차장의 운영을 신청할 경우 <u>최초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2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u> 다만, 관리수탁자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또는 급지 변경 등 최초 계약 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계약을 안할 수 있다.</p>	<p>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p> <p>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 <u>경우</u> -----</p> <p>----- <u>재계약</u>-----</p> <p>-----.</p> <p>-----.</p>

○ 안 제10조는 구청장의 관리, 지도 감독에 민간위탁 주차장 수탁자 또한 응할 의무를 부여함.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p> <p>① ~ ③ (생 략)</p>	<p>제10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p> <p>③ (현행과 같음)</p>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영하는 법인의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9조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영하는 법인이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경우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9조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안 제13조 및 안 제17조는 1일 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할 때 징수토록 하였으며, 노상주차장이 사용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 환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제13조 및 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p> <p>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② ~ ⑤ (생략)</p> <p><신설></p>	<p>제13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p> <p>① ----- ----- 징수하되, 1일 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 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노상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의 주차요금</p>

제17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주차권 :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월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생략)

표 구분 중 “1일주차권”과 “월정기권”에 한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주차권 :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금액
2. 월정기권 :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7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3조제6항을 준용하여 반환한다.

<삭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 안 제19조는 노외주차장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부대시설을 제한하였으며, 서울시와 동일하게 함.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u>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u>	제19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u>규칙 제6조제4항제4호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u> ----- -----

<p>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을 말한다.</p> <p>②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한다.</p> <p><단서 신설></p> <p>③ (생략)</p>	<p>----- 운수시설로 한다.</p> <p>② 노외주차장-----</p> <p>-----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p> <p>-----</p> <p>-. 다만,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	--

- 안 제21조 안 제21조의2 안 제21조의3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가족배려주차 구역,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하위에 있어 부설주차장에만 설치토록 되어 있어 이를 총칙으로 이동하여 노상, 노외 등의 주차장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함.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안 제21조, 안 제21조의 2, 안 제21조의 3)

현행	개정안
<p>제21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p>	<p>제8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p>② 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p>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

④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의 식별이 쉬운 장소에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할 것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 할 것. 다만, 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쉬운 경우는 제외한다.

⑤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의2(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

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 제10호에 의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다.

제8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공영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이

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 기준은 100분이 10 이상으로 한다.

②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

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수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수(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면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②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다.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 제23조와 안 제24조는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등 불분명하게 사용되던 노외주차장의 명칭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명확히 함.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제23조 ~ 안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받은 다음 날부터 별표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권(주·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	제23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 ① ----- ----- 공영노외주차장 ----- ----- ----- ----- ----- ----- ----- ----- ② -----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장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생략)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및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 6. (생략)

 ----- 공영노외주차장 -----

 -----.

제2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공영노외주차장 -----

 -----.

1. -----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 -----

 -----.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 -----
 ----- 공영노외주차장 중 -----

 -----.

3. (현행과 같음)

4. -----

 ----- 공영노외주차장 -----

 -----.

② ----- 공영노외주차장 -----

 -----.

1. ~ 6. (현행과 같음)

- 별지 제6호의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은 주차장법 1)제6조2항 및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별지 제7호의 전기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변경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감면대상의 확대, 최근의 정책의 반영 및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았던 조문들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1)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장 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리시설로 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 다만,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